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
2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3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9
4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40
5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45
6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	52
7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3
8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9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10. 10.

나. 발 의 자 :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2.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업 등 자원순환시설은 미세먼지, 악취, 소음 및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활환경 보장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군 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 이격거리 신설 (안 제20조 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도시건축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9. 29. ~ 10. 0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거창군 계획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환경 보장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 제20조 제4항을 신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거밀집지역(반경 150m 이내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대지경계선 기준 7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2. 18.>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제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 2) 고온 소각시설
- 3) 열분해 소각시설
- 4) 고온 용융시설
-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파쇄·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4) 용융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5) 증발·농축 시설
- 6)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7) 유수 분리시설
- 8) 탈수·건조 시설
-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 1) 고형화·고화·안정화 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3) 응집·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 1) 차단형 매립시설
-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파쇄·분쇄·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4) 용융·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5) 연료화시설
- 6) 증발·농축 시설
-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8) 유수 분리 시설
- 9) 탈수·건조 시설
-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반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 1) 고형화·고화 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3) 응집·침전 시설
-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마) 부숙토(腐熟土: 썩혀서 익힌 흙) 생산시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 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차. 수은회수시설

카. 선별시설(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의2에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은 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한 이격거리 설정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 조항은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주민의 환경 민원과 직결되므로, 입지 기준 강화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타 지자체들의 이격거리를 살펴볼 때 이격거리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김 현 태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생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 (2) (생략) (3) <u>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u>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 마.	(생략)

3. (생략)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0. 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①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위한 고속도로 유희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가.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도심 지역에서는 폭염, 열섬현상, 미세먼지 농도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책으로 자연기반해법의 일환으로 도심숲 조성이 강조되고 있음.
- 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심 내 유희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창군은 이에 근거하여 고속도로 유희부지를 매입해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 녹지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25. 9. ~ 2028. 12.

2) 위 치

- 건계정→거열산성진입도로→남하면→창포원(11km)
- 건계정→국도24호선→마중길→국농소→창포원(7km)
- 하천생성숲(건계정→위천→황강→남하면→창포원)(5km)
- 거창창포원 내

3) 사업내용 : 가로연결숲 18km, 하천생성숲 5km, 거창창포원 바람길
브릿지 조성 등

4) 사 업 비 : 15,000백만원(국비 7,500 도 2,250 군 5,250)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2026년				2027년 이후	비고
	계	국(지특)	도	군		
15,000	1,000	500	150	350	14,000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5,834	528,855			
취득	토지	대평리 60-1번지	잡	15,834	528,855	2026. 1.	도시숲사업 활용	

※ 기준가격 : 공시지가(33,400원/m²)×면적

다. 추진경과

- 1) 2024. 10. :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청 방문
- 2) 2025. 2. ~ 7. : 기후변화 대응 도시바람길 숲 조성방향 수립 용역 완료
- 3) 2025. 3. 18. : 한국도로공사 부지 매도의향 조사
- 4) 2025. 4. 2. : 고속도로 유휴부지 매수의향 검토 보고
- 5) 2025. 4. 17. : 매도 의향 공문 발송
- 6) 2025. 8. : 군 지방재정영향평가 승인
- 7) 2025. 9. : 2026년 국비(지특) 5억 확보

라. 향후계획

- 1) 2025. 9. : 경남도 지방투자심사 의뢰
- 2) 2025. 10. : 한국도로공사 매매계약 사전협의
- 3) 2025. 10. : 거창군 도시바람길 숲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4) 2026. 1. : 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지매입
- 5) 2026. 5. : 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6) 2026. 6. :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7) 2026.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8) 2026. 12. : 공사 착공
- 9) 2028. 12. : 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 1) 숲 및 경관 녹지 조성을 통해 ‘청정거창’ 이미지 강화 및 고속도로 이용자 대상 시각적 홍보 효과로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 2) 도심 유입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대응 도시숲 기능 수행 바람길 숲 조성 등 친환경 사업의 연계 기반 마련
- 3) 주기장, 어린이 체육시설, 체험장 등 주민편의시설로의 활용 가능 및 타 부서 다기능 부지 활용 가능 등 중장기 도시계획 대응 용이, 공공 목적에 맞는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 마련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1] 참조

4. 사업방향 및 타 지자체 조성사례 : [붙임2] 참조

5.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 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3. 검토의견

㉠ 도시바람숲길 사업을 위한 고속도로 유희부지 매입 건은

- 2025년 9월 지특사업 확정으로 150억원(국75억, 도22억 5,000천만, 군52억 5,000만)의 사업비로 2025년 9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도시바람숲길을 조성하게 됨에 따라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유희부지에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것으로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숲을 통해 도심과 도시외곽을 바람길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시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찬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여 폭염과 미세먼지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임.

[바람길숲의 정의 및 유형 : 바람생성숲 -> 연결숲 -> 디딤 확산숲]

- 바람길 숲은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 내·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찬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숲’을 의미함.
- 산림청에서는 바람길숲의 유형을 바람생성숲, 연결숲, 디딤·확산숲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바람생성숲

- 찬공기가 생성되는 도시 외곽 및 도시 내부의 경사도가 높은 대규모 산림 등으로 생성된 찬공기가 잘 순환되고 이동될 수 있도록 임연부(숲의 가장자리)의 산림구조 개선, 시가지 가까이에 훼손된 산림은 우선적으로 복원.
- 찬공기 생성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한 숲을 만들어 식생 활력도를 높임.

- 연결숲

- 바람생성숲에서 만들어진 찬공기가 도심 내부까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연결 및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녹지를 의미하며, 외곽 산림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하천, 도로 및 가로를 활용하여 바람의 이동통로 조성.

- 디딤·확산숲

- 도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숲과 녹지, 유휴지를 대상으로 하며, 도심 내 대규모 유휴지 및 도시재생 사업지, 기존 녹지 등을 활용함.
- 생성숲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되는 데 도움을 주며, 경사가 있는 대규모 디딤·확산숲의 경우 도심 내부에서 소규모 생성숲 역할을 하기도 함.
- 고밀 도심의 경우 다양한 녹화기법을 활용하여 도시바람길숲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 :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직숲, 녹색주차장, 담장허물기 등

※출처 : 엄정희 등(경북대 산림학과조경학부 교수 등) (2022) 도시바람길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 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창군 도시바람길숲 조성방향 수립 용역(25.7.) P9.~10.

○ 본 계획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평리 60-1번지, 15,834m²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로서 도시숲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임.(거창읍 농경지 : 디딤·확산숲, 연결숲 조성)

○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5년 2월에서 7월사이 기후변화 대응 도시바람길 숲 조성방향 수립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예산과목을 살펴보면 도시건축과> 도시관리> 도시개발> 소규모 도로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예산의 전용(변경)제한 규정을 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으로 나와 있고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도시바람길숲 조성방향 수립용역비는 전용(변경)제한 규정 두 가지를 다 어긴 것으로 추정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함에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변경)하여 사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15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임에도 사업이 확정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와 의원들의 의견반영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회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은 본 사업의 일부분인 세부사업을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모순된 상황을 발생하게 했음.
- 취득재산은 도시숲사업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있으나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인 코아루 아파트로부터 도보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주변이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또한 500~600미터 이내에 양향제 생태습지원과 거창생태공원, 심소정, 강변산책로 등 다양한 형태의 녹지공간이 존재하고

있어 도시숲 조성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검토되는 바 설명이 필요함.

- 도심 기후 대응, 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제일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도심 내 녹화를 통한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도시 생태계 조성이 효용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취득재산의 심사에 있어 효용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 아울러,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거창읍 도심지 사업의 비중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참고적으로,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산림청 주도로 2019년 ~ 2022년 1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국 지자체 26개 도시에서 시행되었고 경남지역에는 양산시와 김해시가 사업추진됨. 2025년에는 전국 20곳이 추진중에 있음.
- 해외 사례로는, ‘바람길’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자동차 산업도시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경우, 1930년대 공해도시로 높은 악명에서 벗어나고자, 194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 연구를 시작함.
- 슈투트가르트는 도시계획부터 바람길을 고려하고 이를 녹지 계획에 반영해 오염물질을 저감시킨 대표적인 사례임. 슈투

트가르트는 도시 전체 면적의 60% 가량을 녹지로 조성하여 바람길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열섬 완화 효과를 입증했다.

- 산림청에서는 2020.4.~11.까지 도시바람길숲의 조성원리와 제도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본격적인 연구와 시범 사업을 거쳐 추진되고 있고 학계에서는 경북대학교, 서울시립대 등에서 대구, 대전 등의 실제 사업추진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중에 있어 아직 학문적이고 현장 적용사례에 대하여 좀 더 실증적인 사례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 특히, 거창군은 산림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조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효과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이 필요함. 따라서, 찬공기 발생 및 유동 흐름 특성 분석, 미세먼지 및 폭염발생 지역 분석 등을 통한 찬공기와 바람길의 정량적인 지표와 연속성 등을 파악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10. 10.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2. 제안이유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일부 기준을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1) 표고 :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6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 2) 평균경사도 :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 이하일 것

- 3) 입목축적 :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 기본통계상의 거창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80퍼센트 이하일 것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다목 1) · 3)에 따른 허가기준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산림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
 - 나) 예고결과 : 2025. 9. 24. ~ 10. 01.
 - 3)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기준을 10~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거창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에서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거창군 관내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완화기준 즉, 시행령 별표4에서 위임된 사항 중 다음과 같이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표고 기준: 산지의 표고의 60% 미만(기존 50%)
 - 평균경사도: 30도 이하(기존 25도)
 - 입목축적: 산림기본통계상 거창군 평균의 180% 이하(기존 150%)
- 본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20% 이내 범위에서 완화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음.
- 또한 거창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촌 주거·생산 기반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는 주택, 농림업 부대시설, 소규모 창업시설 등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향후 산지전용허가 심사 시 환경적 안전성 및 재해위험 관리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없음

4. 작성자

산림과장 강 신 여



관련 법령

□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사방댐·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의 재해방지시설(이하 “재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3)에 따른 허가기준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사태취약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경우 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하천·소하천·구거의 선형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배수시설은 배수를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까지 안전하게 분산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배수량이 토사유출 또는 붕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성토비탈면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및 비탈면의 고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할 것 5)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고려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할 것

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밖에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것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u>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u>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납골 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을 것(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분묘를 처리할 것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
--	---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가. 집단적인 조림성 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 되지 아니할 것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 용에 적용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 입을 최소화할 것
나. 토사의 유출·붕괴	660 제곱미터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 및 그 주변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다만,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에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침사지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에는 1) 및 2)를 적용하고,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는 1)부터 4)까지를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부터 4)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를 말한다)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 나)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같은 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경우 (2) 재해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종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복구 의무의 전부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전용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거나 전용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 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3)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u>헥타르당 입목축적</u>(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u>150% 이하</u> 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4)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해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사업계획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4)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 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 <2016. 12. 30.>

3. 산지전용대상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적용대상 사업	세부기준
가.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공장	공장부지 면적(「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 허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도로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정하기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토양을 잘라내는 높이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것

	송전시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휴양림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산지경관 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2) 복구준공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	------	---

비고

1.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다.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 라.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

기준란의 1)부터 4)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4.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써 완화된 허가기준(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3)에 따른 허가기준만 해당한다)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허가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3)에 따른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제2호라목4)의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대상시설·규모 및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3호가목의 송전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마목3)·6)·10),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8. 제1호마목15)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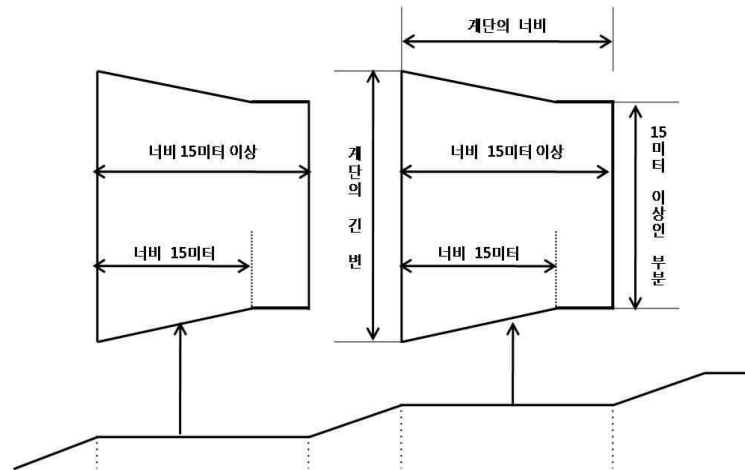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	가.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과일(말뚝)·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 성토지의 자갈·토층(土層)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5)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의 기울기는 토질에 관계없이 1: 1.4 이하일 것 나.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예시 참조).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4)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5) 철도 6) 댐, 저수지 7) 공항
-------------------------------	--

[예시]



8)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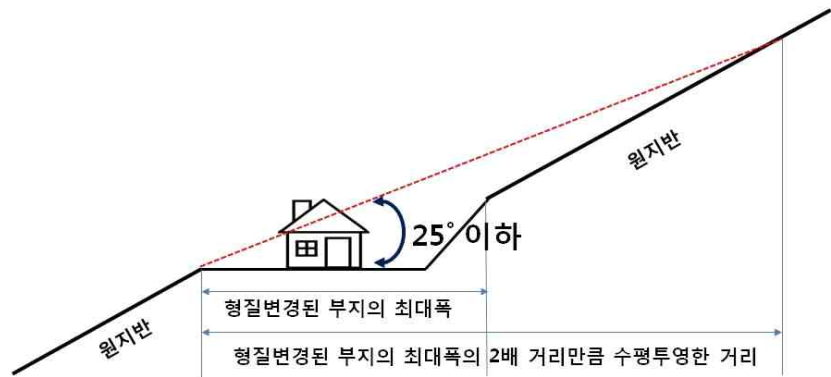
라.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공항·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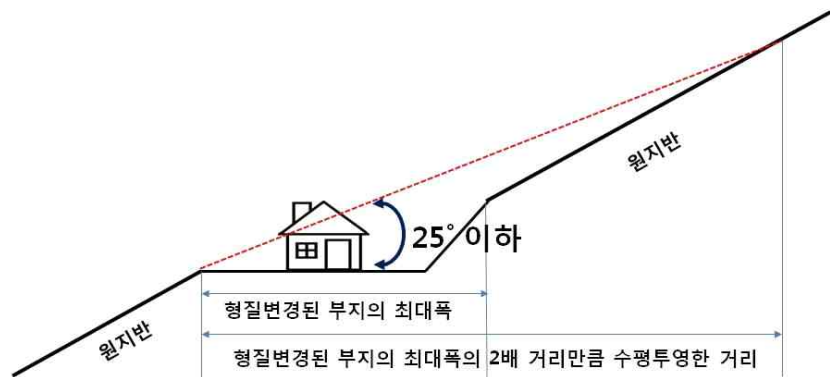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 시]



[예 시]



3. 영 별표 4 제1호
마목6)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 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나.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4. 영 별표 4 제2호가목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다. 산불발생, 축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축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성장량을 반영해야 한다.
5. 영 별표 4 제2호나목1)	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라 산사태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그 주변의 사면 및 계곡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야 한다. 나.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6. 영 별표 4 제2호라목1)	가.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관할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이고 ha당 입목축적(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추가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해 편입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3)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관할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5)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7. 영 별표 4 제2호 라목2)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목 식재를 통한 녹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비교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

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축척 1/5,000 이상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0 이상 1/1,000 이하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3.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 방법 등은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4. 위 표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개소. 다만,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4개소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다. 나목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0. 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2. 제안이유

- 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
- 2)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2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260	240	240	220	280

※ 2025년 출연금 220백만원(2025년 대비 60백만원 증액)

4)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인건비) : 220백만원
- 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전문검사기관 운영 장비 구입 : 30백만원
- 거창석재산업 홍보사업 : 30백만원

나. 예산지원 사유

- 1)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기업애로해소, 공인시험서비스 제공, 대내외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험·검사 장비 구입, 그리고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거창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임

다. 2026년 화강석 연구센터 주요사업

- 1) 거창화강석 홍보사업 추진(2026년 핵심사업)
- 2)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운영
- 3)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활용

4. 참고사항

가. 출연 기관 운영현황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따라 출연코자 하는 것임.

- 출연 예정금액은 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00만원 증액하여 요구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장비구입에 3,000만원, 홍보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장비구입의 경우 2012년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화에 따른 교체이며 홍보사업은 2026년 핵심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거창석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거창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출연 동의 시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임.
- 25년도 출연금은 2억 2,000만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에 소요 되었으며 자체 인건비 예산을 포함하면 3억 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의회에서는 매년 출연안 심의 시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25년도 8월말까지의 실적을 보면 1억 5,650만원으로 25년도 성과목표인 2억 8,000만원 목표 대비 5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기업지원 실적도 석재 시험분석 지원 600건 성과목표에 8월말 현재 359건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적 향상이 요구되며
- 2007년에 설립되어 18년이 경과하였으나 경영자립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임.

○ 다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는 기능석 석재개발과 거창화강석 브랜드 강화라는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거창화강석 산업과 관련하여 여러 기업지원 업무, 거창화강석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 조경석 매출액을 200억까지 끌어 올리는 등 거창석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경제복지국 산림과) [시행 2022. 8. 10.]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0. 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2. 제안이유

- 가. 거창 임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업 : 거창 임업대학
- 나. 위탁사무
 - 1) 거창군 임업대학 교과목 설계 및 세부일정 수립
 - 2) 교육교재 제작 배부 및 강사 섭외·관리
 - 3) 교육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 4) 교육 후 교육완료 보고서 제출

- 5) 현장실습 및 평가 진행 등
- 다. 위탁기간 : 2026. 3. ~ 12.
-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1) 임업경영과 관련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거창 미래임업을 선도할 임업인재 리더 육성 및 선진 임업경영을 위한 경쟁력확보

나. 관계법령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 2)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 조례」 제4조(책무) 및 제5조(재정지원)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계획

-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10월 임시회
-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6. 1월
-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6. 2월
- 4)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3월 중
- 5) 임업대학 입학생 모집 : 2026. 4월
- 6) 임업대학 운영 : 2026. 5월 ~ 10월
- 7)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 2026. 11월 ~ 12월

라. 소요예산(2026년 기준) : 30백만원(군비)

마. 위탁운영계획 : 따로붙임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거창 임업대학을 개설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보면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과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본 사업은 임업 전문경영 기술, 현장중심, 선진사례 습득 등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임업인 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임
- 민간위탁의 적정 여부를 살펴보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의한 민간 위탁 대상 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임업대학 운영은 임산업의 경쟁력을 갖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 또한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 조례」에서는 임업인을 위한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업대학 운영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농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있어 지역에 특화된 경영·기술지도 등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임업은 임업진흥원이나 지역 산림조합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육·지도의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업인들의 기술지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업대학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군비 3,000만원의 예산으로 산림청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법령 위반 사항이나 임업대학 운영의 필요성,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해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2022. 6. 10.>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2. 6. 10.>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 조례

제4조(책무)

-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
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사업
3. 산양삼 재배자 교육
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 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 및 행사
 - 나. 체험행사
 - 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
10.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11. 그 밖에 거창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10. 2.

나. 발 의 자 :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신재화,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2. 제안이유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22.6.10) 및 시행('22.12.11)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예방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마. 예방·지원사업(안 제6조)

바. 예방교육(안 제7조)

사.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조의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농업축산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09. 24.~10. 0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참고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거창군 농어업인의 생명·신체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예방 지원사업을, 제7조에서 예방교육을,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을,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및 사업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 가능한 사항이며 제8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요건에 해당되어 재정지원 가능한 사항임.
- 또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법률위임이 불요하다 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에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 거창군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로 밭과 과수원 등이 경사지에 위치하여 비탈진 농로나 협소한 진입로로 인해 농기계 전도, 추락, 낙상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또한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로, 사다리·고소작업·운반작업이 많고 65세 이상 농업인의 비율이 높아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음.
 - 영세·소규모 농가 비율 높아 안전장비, 보험가입,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함.
 - 농기계 임대를 통한 작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농기계

사용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위험 상승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확대, 마을단위 안전교육 및 점검 철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고령농 대상의 맞춤형 안전보조기기 보급 등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에 철저가 요구되며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가 명확하고 농어업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6조(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 제7조(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 교육)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계획수립 후 구체적인 예산안 마련 예정

작성자 농업축산과장 백 승 열



관련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
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10. 2.

나. 발 의 자 :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최준규,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2. 제안이유

- 거창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처분하는 농기계는 사용 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음. 하지만, 지금까지 거창군은 입찰을 통해서만 매각을 진행해 거창 주민들은 구매하기 어려운 만큼, 처분하는 농기계를 거창 주민들에게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가. 거창 농업인에게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18조제2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농업소득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9. 29. ~ 10. 0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조항에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함.

○ 거창군에서는 불용농기계에 대해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홍보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한 농민의 불평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 매각할 농기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기계명, 규격, 사용연수, 사진, 예정가격 등) 전달이 필요하며
- 매각 공고 시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알림, SNS 활용, 농업인 단체를 통한 안내자료 배포, 회의나 교육 시 공지, 마을이장단 회의 시 안내, 읍·면사무소 현수막, 안내문, 리플릿 등을 통한 홍보, 임대사업소 내 불용농기계 전시코너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 마련으로 매각 농기계가 필요한 농민이 정보부족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다만, 상위법령 조항을 중복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효율적인 자산 처분과 지역농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에 재기재하려는 것으로 필수적인 조항임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농기계 처분

나. 관련 조문: 농기계 처분(안 제1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작성자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관련 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 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 ① ~ ⑤ (생략)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 ① ~ ② (생략)
-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0. 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2. 제안이유

-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개선하여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법령에 정한 기한으로 정비함(안 제10조)
 - 1) 현행 : 해당 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 이내
 - 2) 개선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 나. 인용 법령·조례의 개정사항 정비함(안 제3조·제7조·제16조·제17조)
- 다. 법령 재기재 조항 삭제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29조
-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24. 11.) 반영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9. 5.~9. 2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 11.)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변경하여 신고기한을 개정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보면 공사에 따라 1년~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 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기존 조례에서 건설

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기한으로 인한 소극행정 및 불합리한 상황 발생을 해소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 사 별	세 부 공 종 별	책임 기간
1. 교 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 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 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 구(길도랑)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 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 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5. 전문공사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①실내건축	1년
	②토 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 수	3년
	⑤도 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 붕	3년
	⑨판 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⑯ 아스팔트 포장	2년
	⑰보 링	1년
	⑱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⑲온실설치	2년

비 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그 밖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재기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 사 별	세 부 공 종 별	책임 기간
1. 교 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 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 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 구(길도랑)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 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 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 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②토 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 수	3년

⑤도 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 붕	3년
⑨판 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⑯ 아스팔트 포장	2년
⑰보 링	1년
⑱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⑲온실설치	2년

비 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1.] [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2025. 6. 2., 일부개정]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 9. 20. **별표 3⇒ 별표 4**>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본조신설 2002. 9. 18.]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공사명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공사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024. 11.)

6.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평가대상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부천시 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위치·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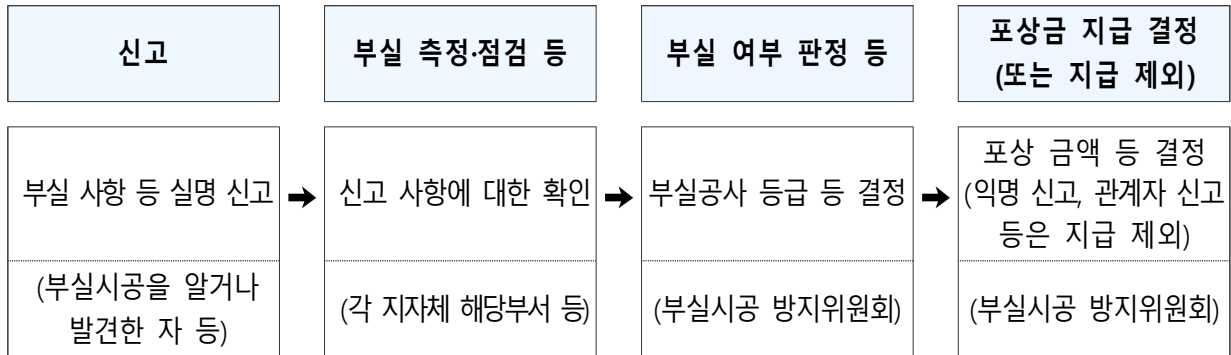
□ **평가기준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부실 공사 방지와 관련된 조례를 운영 중

- 해당 조례는 지자체 및 지방 공사·공단이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부실시공 신고 방법, 신고사항 확인 및 부실시공 판정,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



□ 문제점

- 경기 부천시 등은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고만을 접수하도록 규정하여
이후 발견한 부실시공은 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
행정 유발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

[표 6]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현황

①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고만을 접수하도록 규정	(경기) 부천시, 군포시, 오산시, 양평군, 연천군 (충남) 천안시, 논산시 (전북) 익산시 (경북)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경남) 사천시, 거창군
------------------------------------	---

□ 개선방안

- 경기 부천시 등은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
간 종료일까지로 정하는 등 신고기한 개선

[타 기관 우수사례]

■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0. 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2. 제안이유

-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 명칭을 현행화함(안 제12조)
- 나. 묘역 등 방문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물품 제공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 21,000천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 범위 검토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9. 11.~9. 2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거창사건희생자 합동묘역 내 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족 및 방문객에 대한 예우 강화, 거창사건의 역사적 의미 확산, 추모문화 조성 등 행정, 정책적인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핵심 신설조항은 제17조(기념품 등 지원)로 군수는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유족합동묘역 관리비용의 지원 근거가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28조에 따라 묘지 및 봉안시설 관리, 문화·추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기부·보조를 할 수 있는 요건 중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것’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으로 법적 지출 근거를 명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개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예산확보액이 2025년도에 2,100만원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지출로서 비용추계서 생략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안전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됨.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묘역 등 방문자에게 기념품 등 제공

나. 관련 조문: 기념품 등 지원(안 제1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2025년 예산 21,000천원 확보

1) 묘역 등을 방문하는 단체방문객 10,500명

2) 기념품 개당 2,000원

작성자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00호, 2014.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8조(재정지원 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7.]